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立法·法律顧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提案說明</p> <p>1. 제안이유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연구업무를 추가하는 등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</p> <p>2. 주요골자 가.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영역을 구분하여 규정함(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) 나. 입법고문의 직무로서 연구용역 수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2조제1항제3호) 다. 입법·법률고문의 정원을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함(안 제3조)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立法·法律顧問 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</p> <p>서울특별시의회입법·법률고문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,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.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.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 이라 한다)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<p>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.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.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<p>제3조중 “5인”을 “10인”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倫理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발의년월일 : 1999. 3. 2. 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</p>	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·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이유</p> <p>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는바, 이를 위해서 의원 각자가 지켜야 할 의원윤리강령, 의원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고 의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·처리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特別市議會2002年월드컵蹴球大會 支援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발의년월일 : 1999. 3. 2. 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 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</p> <p>I. 주 문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 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 <p>II. 제안이유</p> <p>세계 축구인의 대제전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주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건설, 대회운영, 시민참여운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고, 특히 관광객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서울을 보여주</p>
--	--

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

서울特別市議會女性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발의년월일 : 1999. 3. 2.
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
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여성정책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복합적이며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는바, 21세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위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증대와 여성 유휴인력의 활용 극대화 방안, 그리고 부녀복지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 활동 확대에 위상을 정립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特別市議會失業者對策및雇傭創出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발의년월일 : 1999. 3. 2.
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
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업자 구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따라 기업·금융·노사·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많은 실업자 및 실직자의 발생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,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업자 및 실직자 구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실업자대책및고용창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特別市議會地方自治發展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발의년월일 : 1999. 3. 2.
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
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

I. 주 문

1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,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2. 위원수는 12인이내로 하고, 그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II. 제안이유

'91. 7월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된 이후 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각종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을 꾸준히 정비하여 왔으나 아직도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 및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.

서울特別市議會葬墓文化改善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발의년월일 : 1999. 3. 2.
발 의 자 : 주세만 위원
찬 성 자 : 이강욱 위원